#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53

발의연월일: 2024. 10. 23.

발 의 자:이만희·구자근·권성동

권영진 · 김선교 · 강선영

조은희 • 이상휘 • 박형수

이양수 의원(10인)

#### 제안이유

목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 안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목재자급률은 평균 15% 내 외로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이에 대응하여 산림청은 공공건축물 분야에 목조화 확대를 위해 '탄소중립을 위한 목조건축화 선언'('23.8.25, 산림청장)을 하였으며, 산림분야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해 고층 목구조물 실현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산림과학 기술분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관리를 선도해 나가고, 국가 NDC 달성 및 목재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국유임산물을 한국임업진흥원이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운영지원을 위한 사항을 보완함(안 제29조의3제 3항).

법률 제 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3항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로, "물품을"을 "물품, 국유임산물을"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제29조의3(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 · 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	
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으며,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	
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재산 및 <u>물품을</u> 한국임업진흥원	법률」에도
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	물품, 국유임산물을
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